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11.6.(금) 16:00 배포 2026.11.6.(금) 09:00

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, 제3차 전체회의 개최

- 범정부 AI 입법 방향 담은「AI 입법 프레임워크」확정
- 사이버 복원력, 초지능 대응 등 국가 AI 핵심과제 TF 7개 구성
-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 의결

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(위원장 대통령, 이하 '위원회')는 11월 6일(금) 15시,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(17층)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회의는 **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**하였으며, 정부·민간 위원과 관계기관장 등 **60여 명**이 참석한 가운데, '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'를 포함한 **총 3개의 안건**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<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요 >

- **(일시/장소)** 11월 6일(금), 15:00~16:00 / 서울스퀘어 17F
- **(참석)** 민간하정우 상근 부위원장**(주재)** 및 위원, 정부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(부위원장),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(부위원장) 및 정부위원(대참 포함), 관계기관장 등 60여명
- **(안건)** ❶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(안) (주관: 위원회)
 ❷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·운영계획(안) (주관: 위원회)
 ❸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 (주관: 행안부)

◇ 안건 1.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

먼저, 제1호 안건으로 **범부처가 일관되게 따를 AI 입법 방향**을 담은 **「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(안)」**을 심의·의결하였다. AI 기술 확산과 AI기본법 제정·시행으로 의료·국방·제조·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**AI 관련 입법 수요가 급증**함에 따라,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.

22대 국회 개원 후 약 29개월간('26.10.19. 기준) '인공지능'을 언급한 법률 제·개정안은 **477건**으로, 21대 국회 4년간(170건)과 비교하면 월평균 기준 **약 4.7배**에 이른다. 개별적인 법률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**법안 간 정합성 확보**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*.

* 22대 국회 발의 법률안의 분야별 현황('26.10.19. 기준) : ①AI 발전 67건, ②AI 융합(AX) 촉진 90건, ③AI 안전·신뢰 확보 15건, ④AI 오남용 방지 102건 등 274건

프레임워크는 AI 분야 법률을 진흥(①AI 발전, ②AI 융합(AX) 촉진)과 규제(③AI 안전·신뢰 확보, ④AI 오남용 방지)의 **4개 분야**로 나누고, **▲AI 기본법 중심 입법 ▲국방·안보 분야 입법공백 해소 ▲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▲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** 등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.

이에 따라 신규 독립법 제정보다 AI기본법이나 **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**하고, AI기본법 적용범위 밖인 국방·국가안보 분야는 **독자 입법을 우선 추진**한다. 또한 규제 강화보다 **기준을 명확히** 하는 데 초점을 두되, 생명·신체·기본권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고 규범 공백이 명확한 경우에는 **즉시 대응하도록** 하였다.

위원회는 법률TF 발족('26.2.27.) 이후 법률안 검토기준을 마련해 주요 발의법안을 검토해 왔으며,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(CAIO)협의회('26.10.2.) 논의를 거쳐 이번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. 앞으로 정부 부처가 AI 분야 법률 제·개정을 추진할 경우 프레임워크를 **검토 기준**으로 활용하고, 위원회는 **이행 상황을 점검해** 나갈 계획이다.

◇ 안건 2.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 · 운영계획

이어서, 제2호 안건으로 위원회의 프로젝트·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**「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·운영계획(안)」**을 심의·의결하였다. 위원회는 출범 1주년('26.9월)을 계기로, 전략 수립을 넘어 **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**를 신속히 창출하는 **프로젝트 중심 운영체계**로 본격 전환한다.

이를 위해 위원회는 **분과별 대표 프로젝트 수요조사**(9.17.~9.28.)와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분과 간 연계·조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추진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**7개 과제**를 TF*로 구성한다.

특히, 청년·지역, 글로벌 협력 등 **국정 핵심 의제**와 **국가 초지능(SI) 대응**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범위원회 차원의 집중적인 조정이 필요한 **3개 TF**는 상근 부위원장 직속의 **'범위원회형'**으로, 분과 간 전문성과 협업이 필요한 **나머지 4개 TF**는 **'분과 연계형'**으로 운영한다.

* **(범위원회형)** ▲청년 도약, ▲국가 초지능 대응, ▲글로벌 AI 전략적 협력
(분과연계형) ▲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, ▲문화·콘텐츠 AI 혁신, ▲데이터 플라이휠 구축, ▲K-AI 풀스택 생태계 구축

각 TF는 **최종 성과물과 완료 시한**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 상황과 성과를 관리한다. 대표적으로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'27년 6월까지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「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」**핵심 보강 10대 과제**를 발굴하고, 국가 사이버복원력 강화 TF는 '27년 3월까지 AI-CSF(Cybersecurity Framework) 연계 사이버복원력 진단체계와 **AI 데이터센터 복합장애·복구 시나리오 3종 이상**을 마련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관계부처는 TF별 **과장급 담당관**과 실무자를 지정하여 논의에 상시 참여하고, **신규 예산 확보와 법·제도 개선**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. 복수 부처가 참여하는 과제는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공동 추진하되, 부처 간 이견은 TF 내에서 우선 조정하고, 합의가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. 주요 사항은 CAIO 협의회 또는 전체회의에 보고·논의하여 **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실행력**을 확보할 계획이다.

위원회는 11월 중 **TF별 세부 추진계획**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참여 인력, 최종 성과물·성과지표, 단계별 추진일정 및 기관별 역할 등을 구체화하고, **TF를 본격 가동**할 예정이다.

◇ 안건 3.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

제3호 안건으로는 "기관 간 데이터 공유·활용을 활성화하고,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"하기 위한 **「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」**을 의결하였다.

‘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*’은 정부부처,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**기관 간 칸막이 없이**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, **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** 중이며 현재 **848개 기관****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다.

* 원천DB ↔ 기관공유시스템(등록·가공) ↔ 국가공유플랫폼(기관간공유) ↔ 공공데이터 포털(개방)

** 공유데이터 등록현황: 공유데이터 54,768건, 메타데이터 2,442,269건('26.10. 기준)

특히 4월 구축 완료된 **‘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’**에서는 **AI 기반 검색 기능**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소재와 제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, 공유된 데이터는 이용조건에 따라 확보하고, 미공유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**보유기관에 제공을 요청**할 수 있다. 또한, 행정안전부는 「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8조*에 따라 **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·발굴**하고, 해당 기관에 데이터 등록을 요청하는 등 **범정부 차원의 공유 데이터**를 확충할 계획이다.

*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한다

아울러 여러 기관의 반복적인 공통 수요를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를 정제·연계·결합한 **복합데이터셋**을 구축하여 **주요 정책현안* 해결에 활용**할 계획이다. 데이터셋과 함께 메타데이터, 품질검증 결과, 표준분석 예제 및 활용 가이드 등을 **패키지로 제공**하여 **기관 간 공동활용을 지원**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분석 결과와 활용 사례를 축적·확산하고, 일회성 데이터 활용을 넘어 **지속 가능한 범정부 데이터 활용체계**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.

* 복지, 청년·고용, 지역소멸, 재난·안전 등 다부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정책현안 중심 선정

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“이제는 AI 대전환의 **기반을 성과로 연결**하고 **우려 요인은 적극 관리**해야 할 시기”라며, “❶기술개발, 실증 등의 현재 AI 정책이 **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**와 같은 **실질적인 부가가치 증대**로 연결되도록 향후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고, ❷**AI 안전성, 금융시장 영향, 양극화**로 대표되는 **AI의 3대 경제·사회 파급영향**에 정책

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"고 밝혔다. 아울러 "❸**피지컬 AI**와 같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**위원회**를 중심으로 **부처 간 협업과 조율**기능을 더욱 강화"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"미·중 **첨단AI 기술 경쟁은 심화**되고, **미국 중간선거 이후, 글로벌 시장환경**의 **변화**가 **예상**되는 상황에서, **위원회**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**AI정책역량**과 **대규모 민관 투자 프로젝트**를 **효과적**으로 **연계·집행**하여 **성과를 창출**하고, **대외 정책환경 변화**에도 **적기 대응**해 나가겠다"라며,

"특히, **그간 민관**이 함께 **개발한 독자 AI모델**과 **AI반도체, 대규모 AI컴퓨팅 자원** 등을 토대로 **세계적 수준의 AI**를 **조속히 확보**하면서, **위원회**를 **중심**으로 **현장과 긴밀히 소통**하여 **우리 AI 생태계 모두가 참여·성장**하는 방향으로 **정책지원**을 **강화**하겠다"고 강조하였다.

하정우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"**출범 2년차**에 접어드는 위원회의 과제는 위원회가 수립한 **계획**을 넘어, **국민**과 **기업**이 **체감**하는 **성과**를 만드는 것"이라며, "**핵심과제 TF**를 통해 **정부**와 **민간**이 **원팀**으로 **실행력**을 발휘해 **성과**로 보여주겠다"고 밝혔다. "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정해진 기한 안에 **결과물**로 이어지도록 **관계부처**를 **적극 지원**하고, **이행 상황**을 꼼꼼히 **점검**해 나가겠다"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총괄전략팀	책임자	팀 장	김보경 (02-2224-4121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민 (02-2224-4122)
담당 부서 <안건1>	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총괄전략팀	책임자	팀 장	김보경 (02-2224-4121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민 (02-2224-4122)
담당 부서 <안건2>	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총괄전략팀	책임자	팀 장	김보경 (02-2224-4121)
		담당자	사무관	이찬용 (02-2224-4125)
담당 부서 <안건3>	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성록 (044-205-2480)
		담당자	사무관	양필수 (044-205-2486)

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·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요

□ 개 요

○ **(일시)** ’26.11.6.(금) 15:00~16:00

○ **(장소)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**(서울스퀘어 17층) ※ 유튜브 생중계

○ **(참석자)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**(경제부총리, 과기부총리, 상근 부위원장), **민간위원·정부위원**, **AI수석**(간사위원) 등 **60여명**

※ **대참 포함, 정부위원 外 기관장, 분과위원 참관 포함**

□ 상정 안건(안)

❶ **(심의)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(안)** (AI전략위)

❷ **(심의)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·운영계획(안)** (AI전략위)

❸ **(심의)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** (행안부)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간	주요 내용
15:00~15:07	▪ 국민의례 및 모두 말씀
15:07~15:58	▪ 안건 설명 및 심의·의결
15:58~16:00	▪ 회의 마무리

붙임2-1 「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(안)」 주요 내용

1. 추진배경

○ AI 기술 확산과 AI기본법 제정·시행에 따른 다양한 **AI 분야**의 **입법 수요***에 대응하여, 범부처 차원의 **일관**된 **입법 방향**을 정립해 나갈 필요

*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**'인공지능'**을 언급한 법률 제·개정안은 **21대 국회**(48개월) **170건**에서 **22대 국회**(약 29개월, ~'26.10.19.) **477건**으로 대상기간 고려 시 4배 이상 폭증

⇒ AI전략위는 **법률TF**를 발족(2.27.~)해 **AI 분야 법률안 검토기준**을 마련, 이에 따라 **주요 발의법안**을 **검토**하고, **AI 입법 프레임워크(안)**을 수립

※ (美) 州별 상이한 AI 규율을 연방 차원에서 정합화하기 위한 AI 국가정책 프레임워크 입법권고안 발표(3.20.)

2. AI 분야 입법 현황

○ **AI진흥·규제**의 **규율 토대**인 **「AI기본법」** 하에 **"진흥**(①AI 발전, ②AI 융합 촉진)", **"규제**(③AI 안전·신뢰 확보, ④AI 오남용 방지)" 분야 **개별법** 시행 중

- **(22대 국회 동향**(~'26.10.19.)) **①AI 발전 67건, ②AI 융합 촉진 90건, ③AI 안전·신뢰 확보 15건, ④AI 오남용 방지 102건** 등 274건 발의

구분	①AI 발전	②AI 융합(AX) 촉진	③AI 안전·신뢰 확보	④AI 오남용 방지
	AI 기술·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	**AI 외 산업 및 부문**에 AI를 적용하고 확산	**AI를 개발 및 이용하는 사업자**에 대한 규제	AI가 야기하는 **역기능과 피해**에 대한 규제
「AI 기본법」	데이터·컴퓨팅·집적단지 및 인력·창업·표준·실증까지 **국가적 AI 발전기반 조성**	**민간·공공 AI 도입·확산 및 AX 촉진**(국방·안보 분야 제외)	투명성·안전성 확보, 검·인증, 고영향 AI 확인, AI 윤리 등 **AI사업자 책무 규율**	-
개별법 (예시)	**「교육기본법」** (국가·지자체 AI교육시책 실시)	**「산업디지털전환 및 AI활용촉진법」**		**「공직선거법」** (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)
		「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법」		**「성폭력처벌법」** (딥페이크 성착취물 금지)
22대 국회 발의 법률안	**AI데이터센터특별법** 제정, AI인재육성특별법 제정, 중소기업 AI활용촉진법 제정, AI산업육성특별법 제정 등 **법률 제·개정안 총 67건**	**국가연구데이터법** 제정, 국방인공지능법 제정,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제정,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 **법률 제·개정안 총 90건**	(AI 사업자 규제 3년 유예, AI 학습데이터 정보공개의무, 저작물 학습 이용여부 확인절차) 등 **AI기본법 개정안 등 총 15건**	**의료기기법, 약사법 등** 개정, 정보통신망법, 전자상거래법, 아동청소년법,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등 **법률 제·개정안 총 102건**
	※ [] : 본회의 가결 및 공포되었으나, 시행 前			

3. 분야별 AI 입법방향(안)

◇ AI기본법 **전반**의 **정책적 지향점**을 **후속 입법**에도 일관되게 견지

< 4대 기본방향 >

㉮ **AI기본법 중심** 입법	㉯ **국방·안보** 분야 입법공백 해소
㉰ 사업자 **예측가능성** 제고	㉱ 역기능 발생 시 **즉시 대응**

○ **(주요 원칙)** 4대 기본방향에 따라 **AI 분야별**(①AI 발전, ②AI 융합 촉진, ③AI 안전·신뢰 확보, ④AI 오남용 방지) **입법 원칙**을 정리

- 입법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**주요 법안**에 **적용·검토** 및 **일반원칙화**해 기본방향, 원칙 마련

< 법률안 검토기준 >

1. 입법 필요성	⇒	2. 입법 우선순위
①②**목적 정당성**(국가적 편익, 현행법 한계 등) ③④**불가피성**(기본권 규범 공백, 현행법 한계 등)	**필요성 인정 시**	**시급성**(구체적 피해, 글로벌경쟁 기회 등) **정책정합성**(AI행동계획, 국정과제 등) **체계정합성**(기존 법체계 중복·충돌 등) **실효성**(규제비용, 예산 등 작동가능성)

1 AI 발전 : ㉮ AI기본법 중심 입법

○ **AI기본법 준칙 적용** : **AI기본법**에 **근거**가 있는 경우(중소기업 지원, 재원 확보 등) **신규법 제정 없이** 기존법 개정 또는 하위법령 정비 우선 검토

○ **글로벌 경쟁환경 등 긴박성 고려** : **AI 데이터센터** 산업과 같이 **신속 입법**이 **기회상실**의 **위험**을 **제거**하는 등의 경우 **별도 입법 필요성** 높음

2 AI 융합(AX) 촉진 : ㉯ 국방·안보 분야 입법공백 해소 ㉮ AI기본법 중심 입법

○ **국방·안보 분야 별도 규율** : AI기본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**국방·안보 분야**의 **체계적 AX 추진**을 위해 별도법 제정 등 입법 수단 검토

○ **기존법 개정 우선** : 공공·산업 등 기 형성된 법체계를 존중해 신규법 제정은 예외적 경우*에만 검토(현행 법체계가 AI 확산에 저해가 되는 경우)

* **예시** : 국가연구데이터법, 디지털헬스케어법(보건의료정보), 바이오데이터법(비의료 바이오데이터) 등 현재 데이터 활용이 저조하여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한 분야

3 AI 안전 · 신뢰 확보 : ㈏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㈐ AI기본법 중심 입법

○ **AI기본법령 정비** : 신규 규제 도입보다는 **현행 AI기본법**의 **작동력 제고**를 **최우선 목표**로, 하위법령 **우선 정비** 및 시행 초기 **계도기간** 운영

○ **영역별 고영향 AI 규율 보완** : 영역별 개별법령 및 **가이드라인 보완***을 **글로벌 기준**에 맞게 추진하고, AI기본법과 중복규제를 해소

*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및 지원데스크 운영(과기정통부) 등을 통해 추진

4 AI 오남용 방지 : ㈑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

○ **신속 입법** : 국민의 생명·신체 등 기본권 침해 위험이 **현실화**된 경우 기존법 개정* 등 **신속·효과적**인 **입법 수단**을 통해 즉시 대응

* 신규 단독법 제정은 기존법 규율이 곤란하거나 입법 공백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

※ **(식품표시광고법·화장품법·약사법)**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(의사 등)가 등장하는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→ 5.26. 개정 공포(11.12.~11.27. 시행)

○ **입법 품질 균형** : **규제 대상·수단**은 면밀한 검토 및 의견청취를 거쳐 **목적 실현**에 필요한 **최소한**이자 **가장 효과적인 방법**으로 설정

※ **(정보통신망법 개정)** AI생성물표시의무를 AI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AI기본법(제31조)과 달리 정보제공자·망이용자에게도 의무 부과 → AI기본법 제31조 개정 논의와도 연계 필요(상임위 논의중)

4. 향후 추진계획(안)

○ AI전략위 **전체회의** 의결을 거쳐 **확정·발표**(11월)

○ AI행동계획 입법과제 등 신규 법률 제·개정 추진 시 **AI 입법 프레임워크**에 맞춰 **법령 제·개정**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

- 각 부처에서 **AI 분야 법률안** 마련 시 **프레임워크를** 적극 활용하고 (필요시 AI전략위 법률TF 검토), 입법 추진 시 관계기관과 협의

붙임2-2 「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·운영계획(안)」 주요 내용

1. 추진 배경

○ 출범 1주년('26.9월)을 계기로 **위원회 2기**는 전략 수립을 넘어 **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히 창출**하는 **프로젝트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 필요**

○ 이에, **임무지향적 TF를 구성·운영**하여 단일 분과나 개별 부처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**융합·범부처 과제를 해결하도록 지원**

- 분과 간 전문성과 관계부처·기관의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, **TF 논의 결과가 실제 제도·사업·예산 등으로 이어지도록 추진**

※ **(선례)** 위원회 산하 「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·혁신 TF」('25.9월~) 논의 결과를 「인공지능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·혁신 추진방향」으로 확정(제2차 전체회의, '26.2월) 및 추진 중

2. TF 구성·운영 방안

○ **(기본방향)** 분과 간 연계·조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추진체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국가 AI 핵심과제에 집중하여 7개 TF 구성·운영

- ①국정 핵심 어젠다(예: 청년, 지역, 글로벌 협력 등) 또는 범부처 차원의 집중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**상근부위원장 직속 범위원회형 TF 3개**, ②분과 간 연계가 필요한 과제는 **분과 연계형 TF 4개로 운영**

< 위원회 대표 TF 구성안 >

: 상근부위원장 직속

TF명	참여 분과특위	참여 부처	대표 성과목표	완료 기한
■ 중장기 청년 도약 TF	산업AX·생태계, 사회, AI민주주의, 교육·인재 등	산업부, 중기부, 교육부, 고용부, 과기정통부, 재경부 등	-제조AX 지원사업을 통한 청년 1만 명 현장 일경험 지원 및 청년 CDC 기반 생활문제 해결 시범사업* 추진 * 3개 시·군·구, 9개 읍·면·동	지원방안 마련 '27.1월 운영지침 '27.12월

▪ 국가 초지능 대응 TF	**기술혁신·인프라**, 글로벌 협력, 국방·안보, 보안 등	과기정통부, 행안부, 국방부, 산업부, 외교부 등	-초지능 분야 「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」 핵심 보강 10대 과제 발굴 ※ 신규·확대 과제 5개 이상, 예산·사업제도 연계과제 3개 이상 포함	'27.6월
▪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TF	**글로벌 협력**, AI민주주의, 과학, 공공AX, 기술혁신·인프라, 사회, 보안, 산업AX·생태계 등	외교부, 재경부, 과기정통부, 산업부, 복지부, 행안부, 중기부 등	-전략적 AI 양자 협력국 3개 이상 선정, 다자 얼라이언스 1개 착수 및 협력국별 시그니처 사업 발굴 등 ※ 국가별 AI 강점·취약점과 협력 가능 분야를 종합한 **'글로벌 AI 정책 메뉴판'을 토대로 선정·발굴**	'27.3월
▪ 국가 사이버복원력 강화 TF	**보안**, 글로벌 협력, 국방·안보 등	과기정통부, 행안부, 기후부, 국정원 등	-AI-CSF 연계 사이버복원력 진단체계 마련 및 AIDC 복합장애·복구 시나리오 3종 이상 설계 등	'27.3월
▪ 문화·콘텐츠 AI 혁신 TF	**사회**, 산업AX·생태계 등	문체부, 방미통위 등	-K-컬처 AI 플랫폼·AI 문화산업 클러스터 등 AI 문화사업 2개 발굴·기획	'27.5월
▪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TF	**데이터**, 기술혁신·인프라, 공공AX, 사회, 과학 등	행안부, 과기정통부, 문체부, 복지부, 국토부, 산업부, 교육부, 중기부, 인사처, 데이터처, 지재처 등	-핵심 분야* 학습데이터 1조 토큰 이상 확보 방안 및 공공서비스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방안 기획 * 한국어·전문분야, 전문가 사후 제작, 멀티모달, 피지컬AI, 코딩	'27.3월
▪ 중장기 K-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TF	**기술혁신·인프라**, 공공AX, 산업AX·생태계 등	과기정통부, 행안부, 산업부, 중기부, 재경부 등	-국산 AI 모델–NPU 조합 10개 이상 검증, AI서비스 3종 개발 및 공공·산업 현장 5개소 이상 적용 등 ※ 국산 AI 모델·서비스·NPU 기업이 참여하는 「K-AI 풀스택 얼라이언스」 출범(~'27.3월)	얼라이언스 '27.3월, 산출물 '27.12월

○ **(구성·역할)** TF 리더, 참여위원,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처·기관 등으로 구성하고, 과제 추진과 목표 성과물 도출 및 후속 이행에 대한 역할·책임 부여

○ **(운영·성과관리)** TF 출범 시, 세부 추진계획*을 수립하고, TF별 논의를 통해 추진 상황과 부처 간 쟁점을 지속 점검·조정

* TF별 목표·주요 과업·목표 성과물·일정 및 참여기관별 역할 등 포함

3. 관계부처 협조사항

○ **(역할·참여)**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·사업의 방향성과 정합성 조정·지원에 집중하고, **관계부처는 TF별 과장급 담당관과 실무자를 지정**하여 **상시 참여**

○ **(성과·이행)** TF 논의를 바탕으로 **목표 성과물과 후속 이행계획을 구체화·집행**하고, 신규 예산 및 법·제도 개선사항은 **위원회와 협의**하여 추진

※ 복수 부처 과제는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공동 추진, 부처 간 이견은 TF 내에서 우선 조정 후,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정. **주요 사항은 CAIO협의회·전체회의 보고·논의**

4. 향후 계획

○ TF별 관계부처 협의 및 세부 추진계획 확정 : ~'26.11월중

※ TF 참여 명단, 최종 성과물·성과지표, 단계별 일정 및 참여기관별 역할 등 구체화

○ TF 출범 및 본격적인 활동 개시 : '26.11월말~

붙임2-3 「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」 주요 내용

□ 개요

○ **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** 각 기관이 보유한 **데이터**를 **손쉽고 빠르게 검색·확보·활용할** 수 있는 **'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' 구축**

□ 구축 현황

○ **(생성) 기관은 원천시스템을 구축·운영**하고,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*를 생성

*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검색·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, 속성,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

○ **(수집·등록)** 공동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기관공유시스템에 등록·관리

구분	공유데이터	메타데이터	개방데이터	외부연계
합계(건)	54,768	2,442,269	110,000	26,468

○ **(검색·활용)**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**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·활용** 가능

- 공유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**국가공유플랫폼(이하 플랫폼)** 접속하여 활용

□ 활용 방안

① **(수요발굴) 정책현안·업무 등 과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수요발굴**

※ (행안부) 과제 발굴을 위한 공공기관 대상 아이디어 경진대회 진행

② **(검색·확인) AI 기술 기반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·확인**

③ **(확보·요청) 공유된 자료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, 미공유된 데이터는 플랫폼의 요청 기능을 사용하여 제공기관에 신청**

※ (행안부) 제공기관이 제공을 거부한 경우 분쟁 조정을 지원(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)

④ **(분석·업무적용)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**

※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, 행안부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기관 수요 기반 공동활용 데이터 조사·발굴 추진: ~'27년 上

○ 데이터 분쟁 조정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: ~'27년 下